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20.1.22.(수)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(02-2100-2690)	담 당 자	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92)
	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(02-3145-7750)		김은순 팀장(02-3145-7970)
	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 현 덕(02-6050-0166)		김은경 수석(02-6050-0158) 권용우 책임(02-6050-0179)

제 목 : 「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 기존 감독지침(19.3월)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.
- ②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.

1 추진 배경

- 新금융상품 기준서(18년 시행)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*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

(참고) 현장의 목소리

- ①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
- ②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실정

- '19.3.12일,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*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.

*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(① 관련)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

□ '19.4.17일,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- 현장에서는 감독지침('19.3월)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,
-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.

➔ 이에,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(객관적 기준 포함)하고,

- (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)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.

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회계기준원, 공인회계사회,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, 상장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('19.9월~'19.12월)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

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

가.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

□ 비상장주식*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(①(α 또는 β) 그리고 ②)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.

* K-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,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(예: 전환상환우선주 등)를 포함

①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(α)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(β)*

*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('19.3월) 내용과 동일

<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(K-IFRS1109(금융상품) B5.2.4) :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>

- ① 예산, 계획,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② 피투자자가 이를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
-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
-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
-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(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)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
- ⑧ ① ~ 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

☞ **상기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**(→ '19년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, p8)

②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*가 없는 경우

*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,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, 파산 등

나. (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下에)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

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.

-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
-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다만,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*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,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* 무자본 M&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,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

그 외,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'중요성 판단'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.

*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

다.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

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(내부관리·외부감사 목적)해야 합니다.

- K-IFRS 1109호 문단 B5.2.4 등을 적용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,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
-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
- 자산총액(120억원 미만), 기간(설립후 5년, 취득후 2년) 기준 적용*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
- *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, 설립일, 최초 취득일, 취득후 경과일수,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
-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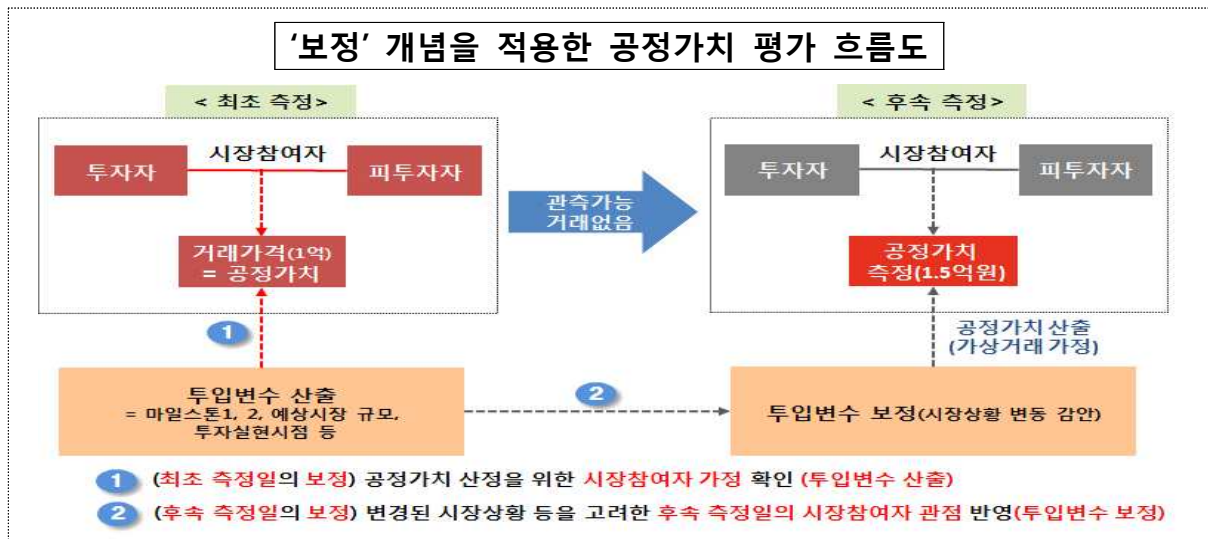
3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

□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* 등을 참고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.

*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(19.6월) -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

○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(Calibration) 개념*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·평가하는 방법입니다.

*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(☞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,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)



< '보정'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(예시) >

1. 2021.3.1 : 최초 측정

투자기업 A는 2021.3.1에 피투자기업 B(창업초기, 바이오기업)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.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**4가지 투입변수(시장참여자 가정 반영)**를 고려함

- ㉠ 마일스톤* 1 : B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년 후 완료
* 마일스톤 :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(예: 특허권 승인 등)을 의미하는 변수
- ㉡ 마일스톤 2 :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
- ㉢ 예상시장 규모 :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(현재 1조원)
- ㉣ 투자실현 시점 :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(IPO) 예상

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를 고려하여 **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**에 따른 **결과값이 거래가격(1억원)과 일치되도록 함** → **전환상환우선주 투자의 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**

2. 2021.12.31 : 후속 측정(가치 변동 없음)

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**2021년말 기준 유의적 변동이 없고**, B도 마일스톤에 따라 **계획한 개발절차를 순조롭게 진행** → **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**

3. 2022.12.31 : 후속 측정(가치 증가)

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(㉠, ㉡, ㉣)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, **투입변수 ㉢**은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**변화(㉢ → ㉣')**

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, **최초 투자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**

A는 **현재의 시장상황**과 지금까지의 **예상보다 양호한 실적**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**투입변수 보정** → **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.5억원으로 평가**

☞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

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.

○ 따라서, 기업은 **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**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 가이드라인의 성격

-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,
 -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,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.
-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.

5 기대 효과

- ①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*하였습니다.

* ① 원가≠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**추가적 예시 제시**(참고, p8)

② 원가를 쓸 수 있는 **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**(자산규모 120억원 미만, 투자기간 2년 이하 등)을 제시

- 이에 따라,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② (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)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6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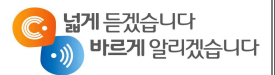
- ① '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- ②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·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
 -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·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참고] 원가≠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
[별첨]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

원가 ≠ 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(K-IFRS1109(금융상품) 문단 B5.2.4)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

K-IFRS 1109 문단 B5.2.4	구체적 예시
<p>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이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의 유의적 악화 • 핵심기술, 진행 중인 프로젝트, 주요 임상 등에 대한 마일스톤의 1년 이상 지연 및 달성가능성 악화 •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 악화(자본 잠식) • 계획된 또는 거의 확정된 수주 규모의 변경 또는 계획 대비 유의적인 실적 저하
<p>② 피투자자가 이를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핵심기술의 공인 외부기관 품질평가·성능시험 통과 또는 실패 • 핵심기술의 성능·품질 미달, 중대 결함, 임상실패 등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 악화 또는 그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주 실패 •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 거절 등 • 기술적 문제로 인한 고객의 공급사 변경통보 또는 입찰 대상 탈락
<p>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 제품 및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수요의 급격한 축소 •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하락 •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우려, 성능 문제 또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
<p>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수출계약 등의 무산·지연, 수출량의 현저한 감소, 피투자회사의 영업환경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• 경기 침체로 인한 제품수요 급감 • 주요 거래업체의 파산 및 거래제한 •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, 손익의 유의적 변동 및 조달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• 영업환경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규의 신설 또는 변경
<p>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종내 선도기업의 재무적 위험 및 유의적인 가치 변동 • 가치평가 대상 비교기업의 시가총액 급등락 •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 또는 전망 악화

<p>⑥ 피투자자에게 부정, 상업분쟁 소송,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소송사건의 피소 및 예상되는 결과치의 악화 • 경영진, 지배주주 및 핵심인력(예: 최고기술책임자 등)의 변동 • 구조조정, 워크아웃, 채권채무 재조정 또는 기업회생 등 법적 절차 개시·진행 • 주요 계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배상 의무 발생 • 불리한 행정처분(예: 영업정지, 부정당업자 제재 등) 발생
<p>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 상품의 이전이나 (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)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의적인 자본거래(예: 특수관계자와 독립적인 제3자와의 유상증자) 등으로 확인된 회사 가치의 중대한 변동 • 피투자회사의 자본 거래로 인한 중요한 주주의 변동
<p>⑧ ① ~ 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나, 발행이후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한 <u>재원부족으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• 주요자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• 후속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• 상장심사 요건 미비로 인한 상장심사 탈락, 상장폐지